

보증상품별 보증료율

(기준일자: '15.6.9.)

1 주택사업금융(PF)보증_표준 PF대출 및 유동화보증

■ 보증료 산정식

$$\text{보증료} = \text{보증금액} \times \text{보증료율} \times \text{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} / 365$$

■ 심사등급별 보증료율 (단위:연)

심사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보증료율	0.605%	0.755%	0.905%	1.055%	1.205%

※ 심사등급은 심사결과로 정하여지는 보증심사평점을 기준으로 정함

2 국민주택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

■ 보증료 산정식

$$\text{보증료} = \text{보증금액} \times \text{보증료율} \times \text{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} / 365$$

■ 보증료율 (단위:연)

심사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
보증료율	0.3%	0.6%	0.9%

☞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매 1년마다 0.1%p를 가산하되 최대 0.2%p까지 가산함

☞ 심사등급은 심사결과로 정하여지는 보증심사평점을 기준으로 정함

3 인·허가보증

■ 보증료 산정식

$$\text{보증료} = \text{보증금액} \times \text{신용등급별 보증료율} \times \text{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} / 365$$

■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 (단위:연)

- 최저 0.122% ~ 최고 0.908%

■ 특별할인

- 우수고객 또는 그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영업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별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증료에 일정한 할인을 할 수 있음
- 필요한 경우 본점승인을 받아 추가로 할인 가능

4 감리비에치보증

■ 보증료 산정식

$$\text{보증료} = \text{보증금액} \times \text{신용등급별 보증료율} \times \text{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} / 365$$

-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 (단위:연)
 - 최저 0.960% ~ 최고 1.920%

5 조합주택시공보증

■ 보증료 산정식

$$\text{보증료} = \text{보증금액} \times \text{신용등급별 보증료율} \times (\text{보증서발급일부터 사용검사예정 월 말일까지의 해당일수})/365$$

-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 (단위:연)
 - 보증료율 : 최저 0.059% ~ 최고 0.602%
 - 개별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증료율에 반영하여 보증심사평점에 따라 최우량 · 우량 · 보통으로 정하여 보증료율을 차등화
- 특별할인
 - 우수고객 또는 그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영업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별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증료에 일정한 할인을 할 수 있음
 - 필요한 경우 본점승인을 받아 추가로 할인 가능

6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및 유동화보증

상품명	이주비 대출보증	부담금대출보증	사업비대출보증		
			1등급	2등급	3등급
보증료율(단위:연)	0.35%	0.17%	0.45%	0.62%	0.92%

7 리모델링자금보증

상품명	이주비보증	부담금보증	사업비보증		
			1등급	2등급	3등급
보증료율 (단위:연)	0.35%	0.20%	0.45%	0.62%	0.92%

■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(단위:연)

신용평가등급	대지비부분	건축비부분				
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AAA, AA	0.173%	0.178%	0.185%	0.192%	0.203%	0.221%
A+		0.194%	0.208%	0.215%	0.226%	0.236%
A-, BBB+		0.216%	0.225%	0.231%	0.242%	0.261%
BBB-		0.232%	0.247%	0.255%	0.267%	0.301%
BB+ ~ CC		0.254%	0.276%	0.296%	0.314%	0.335%
C, D		0.404%	0.427%	0.461%	0.495%	0.531%

※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 5등급은 보증심사평점에 따라 구분

※ 시공자가 연대입보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우수한 시공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적용

■ 기여고객 할인율

- 보증료, 거래기간 등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6개군으로 분류하며, 건축비부분 비율에서 할인 가능

구 분	1군	2군	3군	4군	5군	6군
차감율	0.058%	0.050%	0.042%	0.033%	0.025%	0.017%

■ 신용등급별 보증료 = 대지비부분 보증료 + 건축비부분 보증료

① 대지비부분 보증료 = 대지비부분 보증금액 × 대지비부분 보증료율 × (보증서 발급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재된 입주예정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해당일수) / 365

☞ 대지비부분 보증금액 = 보증금액 × (입주자모집공고안상 세대별 대지비 합계액 / 입주자모집공고안상 세대별 분양금액 합계액)

② 건축비부분 보증료 = 건축비부분 보증금액 × 건축비부분 보증료율 × (보증서 발급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재된 입주예정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해당일수) / 365

☞ 건축비부분 보증금액 = 보증금액 - 대지비부분 보증금액

■ 사업특성별 할인·할증

- 할인 : 사업부지 신탁(3%), 주택사업금융보증 발급(최대 10%) 등
- 할증 : 지적 미정리(3%), 보증한도 초과(5%)

■ 보증해지시 보증료 정산

- 보증서 발급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과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을 알 수 없으므로 보증서발급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재된 입주예정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보증서 발급시에 우선 받고, 보증해지시 보증기간이 확정 되면 확정된 보증료와의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불하는 정산절차를 거침

9 하도급대금지급보증

■ 보증료 산정식

$$\text{보증료} = \text{보증금액} \times \text{신용등급별 보증료율} \times \text{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} / 365$$

■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 (단위:연)

- 최저 0.171% ~ 최고 1.546%

■ 특별할인

- 우수고객 또는 그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영업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별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증료에 일정한 할인을 할 수 있음
- 필요한 경우 본점승인을 받아 추가로 할인 가능

■ 사업특성별 할인·할증 등

- 주택사업금융보증사업장에 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산출된 보증료에 일정한 할인을 할 수 있음

10 주택임차자금보증

■ 보증료 산정식

$$\text{보증료} = \text{보증금액} \times \text{보증료율} \times \text{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} / 365$$

■ 보증료율

구 분	주택임차자금보증	
	주택임대사업자가 민간인 경우	주택임대사업자가 공공기관인 경우
보증료율 (단위:연)	0.5%	0.2%

- 사회취약계층 보증료율 할인 : 주택구입자금보증과 동일

11 후분양대출보증

■ 입주자모집승인전 후분양대출보증 (단위:연)

구분	심사등급				
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보증료율	0.700%	0.780%	0.872%	0.983%	1.176%

■ 입주자모집승인후 후분양대출보증 (단위:연)

구분	심사등급				
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보증료율	0.685%	0.715%	0.808%	1.209%	1.276%

12 주택구입자금보증

■ 보증료 산정식

$$\text{보증료} = \text{보증금액} \times \text{보증료율} \times \text{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} / 365$$

■ 보증료율 (단위:연)

구 분	보증료율
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의 토목·건축 시공평가순위 100위 이내	0.17%
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의 토목·건축 시공평가순위 100위 초과	0.25%
공공택지개발지구 소재 사업장	0.2%
사업시행 또는 시공자가 국가·지방자치단체·한국토지주택공사·공무원 연금관리공단과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	0.2%

※ 시행자(시공사)의 시공능력평가순위를 기준으로 차등적용

■ 사회취약계층 보증료율 할인

구 분	보증료율
보증료율 할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피보증인(배우자 포함)의 연소득이 25백만원 이하인 자 ▶ 피보증인의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▶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, 피보증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▶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, 피보증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.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
할인율	▶ 보증신청인이 보증료율 할인대상 각 호의 1에 해당시 보증료율의 20%를 할인하되,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

13 모기지보증

■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(단위:연)

구분	「신용평가규정」에 따른 신용등급				
	A-이상	BBB-이상	B-이상	CC이상	C이하
보증료율	0.207%	0.281%	0.444%	0.690%	0.924%

14 하자보수보증

■ 보증료 산정식

$$\text{보증료} = \text{보증금액} \times \text{신용등급별 보증료율} \times \text{보증서별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} / 365$$

■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 (단위:연)

- 최저 0.167% ~ 최고 1.169%

■ 특별할인

- 우수고객 또는 그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영업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별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증료에 일정한 할인을 할 수 있음
- 필요한 경우 본점승인을 받아 추가로 할인 가능

■ 사업특성별 할인·할증 등

- 회사의 분양보증 또는 조합주택시공보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출된 보증료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함

15 임대보증금보증

■ 보증료 산정식

$$\text{보증료} = \text{보증금액} \times \text{신용등급별 보증료율} \times \text{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} / 365$$

■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 (단위:연)

- 최저 0.083% ~ 최고 1.966%(사업장 부채비율에 따라 차등화)

■ 우수임대사업자 할인

- 우수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신용등급별 보증료율에 일정한 할인을 할 수 있음

■ 보증해지시 보증료 정산

- 보증기간 이내에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환불함. 그러나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보증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추징하지 아니함

16 전세금안심대출보증

■ 보증료 산정식

$$\text{보증료} = \text{보증금액} \times \text{보증료율} \times \text{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} / 365$$

■ 전세자금대출특약 보증료율 (단위:연) : 0.05%

- ※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에 따른 보증료 별도 추가

17 전세보증금반환보증

■ 주택사업자용

- 보증신청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

A- 이상	BBB- 이상	B- 이상	CC 이상	C 이하
0.229%	0.330%	0.571%	0.810%	1.417

※ 보증채무약정 관계자 중 신용평가등급이 우수한 자를 기준으로 산정

- 보증료 = 보증금액 × 보증료율 × 보증기간(일할계산)

■ 임차인용

구 분	보증료율(단위:연)
개인 임차인	0.150%
법인 임차인	0.227%

※ 일괄납부 또는 연단위 분납가능

■ 임차인용 보증료 할인

구 분	할인율
LTV (선순위채권+전세보증금) ≤ 주택가격 80% ~ 70%	10%
LTV (선순위채권+전세보증금) ≤ 주택가격 70% ~ 60%	20%
LTV (선순위채권+전세보증금) ≤ 주택가격 60%	30%

18 전세임대주택전세보증금반환보증

■ 선납보증료 산정식

- 아래와 같이 계산한 보증료 전액을 선납 보증료로 징수

(보증신청인과 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보증서가 발급된 사업연도내 분납 허용가능)

$$\text{선납보증료} = \text{포괄보증금액} \times \text{보증료율} \times 2\text{년}$$

■ 기본보증료(단위:연) : 0.1% / 최저보증료율(단위:연) : 0.0153%

■ 손실률에 따른 보증료 추징·환불

- 기본 보증료율을 기준으로 선납된 보증료에 대해 추후 손실률에 따라 추징 또는 환불

■ 정산시점

-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

19 임차료지급보증

■ 보증신청인 및 보증채무약정 관계자의 개인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

개인신용평가 등급	보증료율(단위:연)	개인신용평가 등급	보증료율(단위:연)
1등급	0.22%	6등급	1.12%
2등급	0.25%	7등급	1.28%
3등급	0.30%	8등급	1.44%
4등급	0.49%	9등급	1.60%
5등급	0.72%		

20

임대관리보증

■ 임대관리임대료보증

보증료 산정식

$$\text{보증료} = \text{보증금액} \times \text{보증료율}^* \times \text{보증기간(일할계산)} / 365$$

* 보증료율 (단위:연)

심사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보증료율	1.08%	1.69%	2.31%	3.37%	5.15%

※ 보증료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, 1년 분납 허용

■ 임대관리임대보증금보증

보증료 산정식

$$\text{보증료} = \text{임대보증금 인출액} \times \text{보증료율}^* \times \text{임대보증금 관리기간에 (보증서 발급일~임대보증금 인출일) 해당하는 총 일수} / 365$$

* 보증료율 (단위:연) : 0.06% 적용

※ 보증료는 임대보증금 운용이익(이자)에서 징수(후취)

21

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

보증료율(단위:연)	중도해지 수수료
1. 임대사업자: 0.5% 2. 기업형주택임대사업자: 0.337%	중도해지금액 × 0.2% × 잔존기간/보증기간

22

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[오피스텔]

■ 보증료 산정식

$$\text{보증료} = \text{보증금액} \times \text{보증료율} \times \text{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} / 365$$

■ 보증료율

구 분	근로자·서민가구 전세자금	저소득가구 전세자금
보증료율 (단위:연)	0.5%	0.4%

용자금융율

신용평가등급	용자이율	지연배상금율
AAA, AA, A+, A-, BBB+, BBB-	<u>연1.00%</u>	연7.0%
BB+, BB-, B+	<u>연1.05%</u>	
B-, CCC+, CCC-, CC, C	<u>연1.10%</u>	
D	<u>연1.15%</u>	

비고 : 1. (삭제)

2. 신용평가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익일부터 변경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용자 이율을 적용한다.
3. 회생계획인가를 득하였거나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한 업체로서 당해 차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 이율에 불구하고 당해 인가결정 또는 약정에서 정한 이율을 우선 하여 적용할 수 있다.